

의안번호	2201246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계번호	24C15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우선이용 대상에 현행 저소득 취약계층 외에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17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이용 등 대상 확대(안 제15조의17)

-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

2. 운영기준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이용 대상자 및 해당 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일정 비율의 비용을 감면해 주고 있음

[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현황

지역	산후조리원 명칭	지역	산후조리원 명칭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자료: 보건복지부

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개정안에 따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이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통해 요금을 감면받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수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병혁	02-6788-3739	wbhcd@assembly.go.kr